

부록

제주해녀 관련법과 조례

1.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 286
2.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 290
3.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 293
4.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산업 진흥 조례 / 297
5.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300
6.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303
7.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 304
8. 어촌계 정관 / 314
9. 일반인 어촌계 가입절차 / 332

1.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소관부서: 해양수산물국 해녀문화유산과 [시행일 : 2015-12-31]

(제정) 2006-11-29 조례 제 150호

(일부개정) 2008-01-09 조례 제 318호

(일부개정) 2015-12-31 조례 제 151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바다에서 고된 조업환경 등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에 따라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진료비를 지원하여 해녀의 건강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녀”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여자를 말한다.
 - 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 나.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 다. 마을어장에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사람
2. “진료기관”이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병·의원중 해녀들의 진료를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3. “진료비”란 검사·진찰료, 처치료 및 그 밖의 치료비를 말한다.[전문개정 2015.12.31.]

제3조(진료비 지원대상자) 진료비의 지원대상자는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녀
2. 해녀로 등록된 후 10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해녀이었던 사람.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상응하는 남자 [전문개정 2015.12.31.]

제4조(진료비 지원범위) ① 진료비의 지원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비의 본인부담금액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범위 안에서 그 지원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제1항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진료비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진료비를 지원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5.12.31.>

제5조(진료기관의 지정)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대상자에 대한 진료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이나 한방병원, 요양병원, 병·의원, 한의원을 진료기관으로 지정·운영한다. <개정 2008. 1. 9, 2015.12.31.>

②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진료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진료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제6조(진료기관의 취소) 도지사는 진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대상자의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3. 허위나 과다로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청구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의료법」에 의한 휴업을 하거나 폐업한 경우
5. 진료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경우

제7조(해녀증의 발급) ① 도지사는 진료비 지원대상자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대상자에게 해녀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해녀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소속 수산업협동조합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31.]

제8조(해녀증의 취소) ①도지사는 해녀증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녀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해녀증을 발급받은 경우
2. 해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제3조 각 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다른 시·도로 진출한 경우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녀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잠수어업인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목개정 2015.12.31.]

제9조(진료) ①제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대상자가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와 해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진료기관은 제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대상자로부터 진료신청이 있는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진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10조(진료비의 청구·지급) ①진료기관은 매월말 기준으로 도지사가 요청한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도지사는 진료기관으로부터 진료비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내용을 확인한 후 진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2015.12.31.>

제12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한 제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대상자 진료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진료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13조(청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1. 제6조에 따른 진료기관 지정의 취소
2. 제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따른 해녀증의 취소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③(진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받은 진료기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받은 진료기관으로 본다.
- ④(잠수어업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발급받은 잠수어업인증은 이 조례에 따른 잠수어업인증으로 본다.
- ⑤(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제318호, 2008.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8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직 잠수어업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직 잠수어업인으로 등록된 자 중 이 조례 공포일 현재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면서 잠수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제3조(종전 조례에 따른 잠수어업인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잠수어업인증은 2016년 5월 31일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해녀증으로 본다.

2.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녀문화유산과 [시행일 : 2016-03-16]

(제정) 2007-05-09 규칙 제 64호

(일부개정) 2016-03-16 규칙 제 478호

제1조(목적)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16.>

제1조의2(진료비 지원범위)「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단서에 따라 그 지원범위를 조정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3.16.]

제2조(진료기관의 지정 등)① 조례 제5조에 따라 해녀 진료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녀 진료기관 지정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② 도지사는 진료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녀 진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

제3조(변경사항 등의 신청)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진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진료기관의 명칭 변경,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및 진료기관 지정이 가능한 지역 안에서 진료기관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

1. 변경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
2. 해녀 진료기관 지정서 1부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해당 해녀 진료기관 지정서에 기재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

제4조(진료기관의 지정서 반납)조례 제5조에 따라 진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진료기관 지정이 취소되거나 진료기관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진료기관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해녀증의 발급 등)① 조례 제7조에 따라 해녀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녀증 발급신청서에 해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수산업협동조합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녀로부터 해녀증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해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해녀증을 발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3.16.>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해녀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해녀증 발급대장에 연도별, 수협별 발급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 발급사실을 소속 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

⑤ 삭제<2016.3.16.>

⑥ 삭제<2016.3.16.>

⑦ 도지사는 해녀증을 발급 받은 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결과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녀증을 회수하고 해녀증 발급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

[제목개정 2016.3.16.]

제6조(해녀증의 재발급)① 해녀가 해녀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녀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

1. 해녀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1부

2. 해녀증이 훼손된 때에는 그 해녀증

3. 해녀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녀증 재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 재발급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초 발급번호를 기재한 해녀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

[제목개정 2016.3.16.]

제7조(진료비의 청구)진료기관의 장은 조례 제5조 및 이 규칙 제2조 따라 진료기관으로 지정된 후에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8호서식의 진료비 청구서에 별지 제9호 서식의 진료비 내역서 등 도지사가 요청한 방법으로 도지사에게 다음달 15일까지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3.16.]

제8조(진료비의 지급)도지사는 진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진료비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내용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진료실적의 정리)도지사는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해녀 진료실적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규칙인 제주도잠수어업인진료비 지원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잠수어업인증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발급된 잠수어업인증의 유효기간은 이 규칙이 공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부칙 <제478호,2016.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별표

(별지서식)

3.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녀문화유산과 [시행일 : 2018-12-31]

(제정) 2009-11-04 조례 제 548호

(일부개정) 2017-09-27 조례 제 1918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8-12-31 조례 제 217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적으로 희소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인 제주해녀들의 고유한 공동체 문화인 해녀문화를 체계적으로 발굴, 보존 및 전승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1. “해녀”란 현재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안의 마을 어장에서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고 있거나 과거에 이와 같은 일에 종사했던 여성을 말한다.
2. “해녀문화”란 제주해녀들이 물질과 함께 생활에서 생겨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하며, 물질기술, 어로민속지식, 신앙, 노래, 작업 도구와 옷, 공동체의 생활양식 등을 포함한다.
3. “출항물질”이란 제주도 바깥으로 나가 해녀활동을 하고 있거나 과거에 해녀활동을 했던 것을 말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녀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녀문화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8.12.31.>

1. 해녀문화 발굴·조사·연구사업
2. 해녀어장 보호 및 관리
3. 제주해녀 관련 문화재 지정 및 등재된 유네스코(UNESCO) 무형문화유산의 자원화
4. 해녀문화 세계화 및 홍보
- 4의2. 출향해녀(현재 출향물질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제주해녀를 말한다)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주해녀항일운동 계승사업 지원
6. 그 밖에 해녀 관련 각종 시책 개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제4조(지원) 도지사는 해녀 생업기술의 전수와 연구 및 조사, 해녀문화의 발굴과 보존·전승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2.31.]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해녀문화의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계획 수립
2. 삭제<2018.12.31.>
3. 삭제<2018.12.31.>
4. 삭제<2018.12.31.>
5. 그 밖에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녀문화 업무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9.27., 2018.12.31.>

-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회의의원 1명과 해녀문화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해녀문화 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8.12.31.>
-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31.>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해녀문화 교육 활성화) 도지사는 해녀문화의 전승을 위하여 해녀문화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2.31.]

제9조(연구기관 설립 등) ① 도지사는 해녀의 삶과 사회·문화적 기능의 보존 및 역사·문화적 가치 등을 조명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연구를 해녀문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10조(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등에 관한 사업 및 행사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위탁사무에 관하여 위탁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1조(교류) 도지사는 과거 제주해녀가 출항물질을 했던 지역이나 관련 국제기관 및 해외 지역 등과의 교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12조(해녀의 날) 도지사는 “해녀의 날”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해녀문화를 홍보하고, 후세에 전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8호, 2017.9.27.>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178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산업 진흥 조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녀문화유산과 [시행일 : 2014-10-22]

(제정) 2012-07-18 조례 제 931호

(전부개정) 2014-04-21 조례 제 118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녀문화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해녀문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해녀문화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녀문화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녀”란 현재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안의 마을 어장에서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고 있거나 과거에 이와 같은 일에 종사했던 여성을 말한다.
2. “해녀문화”란 제주해녀들이 물질과 함께 생활에서 생겨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하며, 나잠기술, 어로민속지식, 신앙, 노래, 작업 도구와 옷, 공동체의 습속 등을 포함한다.
3. “해녀문화산업”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문화적 가치가 내포된 상품을 기획·제작·가공하여 생산하거나 유통, 마케팅 및 소비과정에 참여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연관 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 가. 해녀 및 해녀문화 관련 문화콘텐츠 개발
 - 나. 해녀 및 해녀문화 관련 여행 및 체험관광 상품 개발
 - 다. 해녀 및 해녀문화 관련 유·무형의 상품 제조 및 서비스
 - 라. 해녀 및 해녀문화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해녀문화사업자”란 해녀문화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해녀문화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해녀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시장(제주시장·서귀포시장을 포함한다)과 해녀문화산업 관련 기관·단체·연구소·법인·대학·민간기업·개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해녀문화사업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해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해녀문화산업관련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녀문화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콘텐츠 및 제품 개발과 산업화·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2. 해녀문화산업 관련 여행 및 체험관광 상품 개발,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3. 해녀문화산업 관련 창업을 위한 창업자금 융자
4. 해녀문화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국제교류) 도지사는 해녀문화상품의 해외시장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방송·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홍보활동, 국제행사 및 견본시장 참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도지사는 해녀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연구기관, 그 밖의 해녀 및 해녀문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계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해녀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육성을 위하여 매년 보조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① 도지사는 해녀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주요시책 자문) 해녀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해녀문화보존및전승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1. 해녀문화산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해녀문화산업정책의 개발과 자문
3.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녀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해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녀문화산업 관련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위탁사무에 관하여 위탁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에 따른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5.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해양수산물국 해녀문화유산과 [시행일 : 2018-12-31]

(제정) 2017-06-02 조례 제 1870호

(일부개정) 2018-12-31 조례 제 217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제주 해녀들의 고령화와 해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그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해녀어업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제주해녀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1. “해녀”란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마을어장에서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여성을 말한다.
2. “해녀어업”이란 해녀가 아무런 장치 없이 바다에 잠수해 전복, 소라, 미역 등 유용수산물을 채취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어업방식을 말한다.
3. “마을어장”이란 「수산업법」제9조제1항에 따라 면허받은 수역을 말한다.
4. “고령해녀”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 해녀의 자격을 취득하고 현재 해녀어업에 종사하는 70세 이상의 해녀를 말한다.
5. “신규해녀”란 도지사가 규정하는 해녀의 자격을 신규로 취득한 40세 미만의 해녀를 말한다.
6. “해녀수당”이란 제4호에서 정한 고령해녀 중 물질작업에서 은퇴하는 해녀 및 소득보전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7. “정착지원금”이란 제주자치도에 있는 해녀학교에서 해녀 양성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어촌계 가입이 확정되거나 가입어촌계의 현직 해녀대표로부터 물질능력을 인정받은 신

규해녀에게 일정기간 소득보전 및 어촌 정착 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8. “은퇴수당”이란 80세 이상 현직 고령해녀 중 물질작업에서 은퇴를 희망하는 해녀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해녀어업의 보전과 육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해녀어업의 보전과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전 및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녀어업 보전 및 육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고령해녀 및 신규해녀 수익보전 및 지원 정책
3. 해녀어업 중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 대책
4. 해녀 양성 교육 및 신규해녀 가입 어촌계 지원정책
5. 그 밖에 해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 개발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어업인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해녀어업의 보전과 육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및 정착지원금 지급) ① 도지사는 고령해녀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은퇴 또는 소득보전을 위한 수당과 신규해녀에게는 소득보전과 어촌정착을 위한 지원금을 다음 각호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고령해녀 은퇴 및 소득보전수당 : 월 30만원 이내
2. 신규해녀정착지원금 : 월 50만원 이내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당 및 지원금의 지급 기준 및 기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제7조(환수)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수당 및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이나 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대상자가 도지사가 정한 지급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그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한 금액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 제8조(해녀 양성교육 및 어촌계 정착지원 등) ① 도지사는 해녀어업을 보전·육성하기 위하여 해녀 양성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해녀 양성교육은 어촌계와 연계하여 운영하되, 관련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녀 양성교육 과정을 수료한 해녀가 어촌계에 가입할 경우 어촌계에 유용 수산자원 조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민간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해녀어업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9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녀문화유산과 [시행일 : 2017-07-31]

(제정) 2017-07-31 규칙 제 54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고령해녀수당 및 신규해녀정착지원금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지급 절차) ① 고령해녀수당 및 신규해녀정착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 1호서식의 해녀수당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규해녀정착지원금 신청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하거나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고령해녀수당 및 신규해녀정착지원금은 매월 30일(2월은 28일)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에 도지사는 지급대상자의 개인별 금융계좌에 직접 입금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별표

별표, 별지

7.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소관부서 : 해양수산국 해녀문화유산과

(제정) 2008-03-05 조례 제 346호

(전부개정) 2013-12-31 조례 제 111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해녀박물관길 26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이 조례에서 “박물관자료”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박물관자료”를 말한다.

제2장 박물관 운영 및 관람

제4조(개관 및 휴관)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2. 매월 첫째 및 셋째주 월요일
 3. 전시물 교체·공사, 훈증소독 등의 사유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때에는 그 휴관일을 미리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 및 대표시간)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 ② 관람권의 대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 및 대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① 박물관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 ③ 기획전시 작품을 관람하려는 자의 관람료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관람료는 전시성격에 따라 기획전시를 하려는 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④ 박물관을 관람하려는 사람이 관람하기 전에 관람료의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관람료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7조(관람료의 감면)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국민·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12세 이하인 어린이(단체인 경우에는 인솔교사를 포함한다)
3. 65세 이상인 사람
4. 박물관에 자료를 무상기증한 사람
5.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 사람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8.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1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등의 판정자 및 수

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14.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수행자와 유족
 1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 및 그 유족
 1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17.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8.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19.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에 따라 잠수어업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그 소지자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으로서 그 소지자(동행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
 21.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도지사는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 및 제주해녀문화의 전승 보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공익목적의 행사·전시·공연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④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나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재외도민에게는 관람료의 50%를 감면한다.

제8조(관람권)① 관람권은 어른, 청소년 및 군인에 대하여 각각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분한다.

1. 관람권 : 별지 제1호서식
 2. 단체관람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관람료 및 제1항에 따른 관람권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청소년: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2. 군인: 하사 이하의 복무중인 군인(의무소방원, 전투·의무경찰, 경비교도대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3. 어른: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4. 단체: 동일한 목적으로 1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③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6조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아 관람권을 사용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람권의 검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관람권에 검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검인대장에 적어야 한다.

제9조(대표 및 수표)① 관람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박물관 입구의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② 제6조에 따른 별표 1의 관람료 및 제7조에 따른 관람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매표소 중 관람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되어야 한다.

③ 수표원은 관람객이 입장할 때 관람권의 점선부분을 절취하여 회수하고 잔여부분은 관람객에게 교부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 발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설 사용허가를 받아 전시 등을 하는 경우에는 관람권의 대표 및 수표는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책임으로 하되, 협의에 의하여 박물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일일매표상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적어야 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관람권 판매 수불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관람의 금지)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전시품 및 시설물의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박물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정된 흡연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
2.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거나 손상하는 행위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사용하거나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

4. 고성·난무하는 행위

5. 취사행위

6.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7. 그 밖에 다른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거절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12조(편의시설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박물관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공원 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식당

2. 편의점

3. 기념품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장 시설 사용허가

제13조(시설 사용허가)도지사는 박물관의 자체 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의 발전 및 제주해녀문화의 보존, 보급 및 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예술작품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박물관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시설 사용허가 기준)① 박물관 시설의 사용허가 대상은 박물관 1층 로비, 해녀문화센터, 편의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로 한다.

②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③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이나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시설 사용허가 신청)① 박물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8호서식의 박물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행사 또는 전시계획서를 덧붙여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사용이 긴급한 전시 또는 행사로써 박물관의 운영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연락처(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성명을 말한다)
2. 전시 또는 행사계획서(전시 또는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 등을 포함한다)
3. 사용예정시설 및 장소
4. 사용기간(행사 및 전시기간, 집기·비품 등의 반입 및 설치일, 철거일 등을 포함한다)
5. 참가예정인원
6. 전시품의 수량 및 규격(전시만 해당한다)
7. 관람료의 징수 여부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신청 접수대장에 적어야 한다.

제16조(시설 사용허가서의 교부 등)① 도지사는 제15조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제15조의 단서의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알릴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③ 박물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고, 도지사는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변경신청 접수대장에 적어야 한다.
- ④ 도지사는 시설을 사용허가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행사 차량출입의 통제

2. 상거래행위의 금지

3.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금지

4.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금지 등

⑤ 시설 사용허가 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박물관의 업무,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그 허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17조(시설 사용료)①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8조(시설 사용료 감면)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도지사(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

2. 국·공립박물관 및 국·공립대학박물관이 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

3. 박물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비수익성 행사만 해당한다): 전액 감면

4. 도지사가 후원하는 행사: 50퍼센트 감면

5. 해녀문화 전승·보전 및 해양문화관련 행사: 50퍼센트 감면

제19조(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기간 중 박물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3의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허가 중지 및 변경) 도지사는 박물관의 업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이미 허가된 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 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시설 사용허가의 취소)도지사는 대관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용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 그 사용을 정지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행사를 할 때

2. 사용조건을 위반한 때

3.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박물관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22조(손해배상 및 원상복구)① 박물관 자체 전시물 및 시설물의 경우 관람자가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가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
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4장 박물관자료의 복제 및 열람

- 제23조(복제신청)① 박물관자료를 복제·열람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박물관자
료 복제·열람 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가 복제·열람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박물관자료 복제·열람허가
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필요하
여 박물관자료를 복제·열람하려는 때에는 자료 번호, 자료 명칭, 복제·열람목적, 복
제·열람일시 및 복제·열람내역 등을 기재한 문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24조(복제·열람허가의 제한)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제·열람허가나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박물관자료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복제·열람허가 또는 승인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할 때
 - ② 도지사는 박물관이 보관 또는 전시하고 있는 개인소유 박물관자료의 복제·열람을 허
가 또는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박물관자료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25조(복제요금)복제요금은 도지사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징
수한다.

1. 3차원 입체촬영
2. 비디오 촬영
3. 사진촬영
4. 탁본
5. 모사(실측)
6. 모조(실측)
7. 사진자료 필름복제
8. 사진자료 게재허가
9. 디지털 사진자료

제26조(요금의 납부)제2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얻어 박물관자료를 복제하는 자는 복제요금을 복제하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27조(요금의 감면)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제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제하거나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복제할 때
2.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
3. 비영리 학술기관이 연구의 목적으로 복제할 때
4. 박물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 목적으로 복제할 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써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라고 인정할 때

제28조(변상)박물관자료를 복제·열람한 자가 복제·열람으로 인하여 박물관자료나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도지사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 박물관자료 및 시설물을 수리·복원하고 그 훼손으로 인한 가치하락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29조(허가 등의 취소)도지사는 복제·열람을 하는 자가 도지사가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복제·열람을 중지시키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0조(연기)도지사는 복제·열람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가 복제·열람을 시작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복제·열람을 연기하려는 때에는 한 차례만 그 연기를 허가 또는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복제·열람을 하는 자가 복제·열람을 시작한 후에는 이를 허가 또는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보칙

제31조(규제의 재검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8년 10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시설 사용자의 검인 의무
 2. 제10조에 따른 관람의 금지
 3. 제11조에 따른 행위의 제한 및 관람의 거절·금지
 4. 제14조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 기준
 5.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 신청
 6. 제16조제3항에 따른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
 7.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 납부기한
 8. 제19조 및 별표 3에 따른 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
 9. 제21조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10. 제24조에 따른 박물관자료의 복제·열람허가의 제한
 11. 제30조에 따른 박물관자료의 복제·열람의 연기 제한
- 제32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별지/별표

별표, 별지

8. 어촌계 정관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 - 00호

「어촌계정관(예)」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2016. 12. 1

해양수산부장관

어촌계 정관(예)

제1장 총 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어촌계(이하 "계"라 한다)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되며, "○○어촌계"라 한다.

(비고) 명칭 중에는 반드시 「어촌계」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목적) 이 계는 어촌계원(이하 "계원"이라 한다)의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역) 이 계의 구역은 ○○(시·군) ○○(읍·면·동) ○○리 일원으로 한다.

(비고) 2 이상의 행정구역 또는 마을을 구역으로 할 경우에는 그 행정구역 또는 마을을 모두 기재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계의 주된 사무소는 ○○(시·군) ○○(읍·면·동) ○○리 ○○(도로명 주소)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종류) ① 이 계는 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다.

1. 교육·지원 사업

가. 생산 및 생활지도사업

나. 어업에 관한 기술과 경영의 향상을 위한 지도

2. 어업권의 취득 및 어업의 경영
 3. 소속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취득한 어업권의 행사
 4. 어업인의 생활필수품과 어선 및 어구의 공동구매
 5. 어촌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 가. 선착장, 선류장, 선양장
 - 나. 공동처리장, 공동창고
 - 다. 기상신호대
 - 라. 어부림
 - 마. 정부,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보조금으로 지원한 시설 및 위탁한 사항
 - 바. 그 밖에 조합의 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어촌 공동시설
 6. 수산물의 간이공동제조 및 가공
 7. 어업자금의 알선 및 배정
 8. 어업인의 후생복지사업
 9. 구매·보관 및 판매사업
 10. 다른 경제·사회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조합의 위탁사업 및 보조에 따른 사업
 12. 다른 법령에서 어촌계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4. 그 밖에 이 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② 이 계가 제1항제11호의 위탁사업을 할 때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조합과 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 제6조(공고방법) 이 계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원에게 통지할 수 있다.
- 제7조(계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이 계가 계원에게 통지 또는 최고를 할 때에는 계원 명부에 기재된 계원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한다. 다만, 계원이 따로 이 계에 연락처를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제8조(규약)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으로 정한다.

1. 총회(대의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2. 업무의 집행 및 회계에 관한 사항
3. 계원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어업권의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이 계의 규약은 조합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회장이 정한 규약(예)에 따라 제정·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계원

제9조(계원의 자격)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계의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계에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준어촌계원) ① 이 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준어촌계원(이하 "준계원"이라 한다)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계원의 자격이 없는 어업인 중 이 계가 취득한 마을어업권 또는 계의 구역에 있는 조합이 취득한 마을어업권의 어장에 「수산업법」제2조제10호에 따라 입어하는 사람
 2. 이 계의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계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② 이 계의 준계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계가 정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준계원은 이 계가 수행하는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준계원의 경우에는 마을어업의 어장에 입어할 수 없다.
- ④ 준계원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가입) ① 이 계의 계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가입신청서에 조합장이 발급한 조합원 원장, 조합원 증명서,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그 밖의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첨부하여 어촌계장(이하 "계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장은 제1항의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총회에 부의하여 계원의 자격유무를 심사하고, 가입 승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이 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계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달 수 없다.

④ 삭제

⑤ 가입을 승낙할 때에는 서면으로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계원 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상속에 따른 가입) ① 사망으로 인하여 탈퇴된 계원의 상속인(공동상속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선정한 1명의 상속인을 말한다)이 계원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계원이 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인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3조(계원의 신고의무) 계원이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계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이 계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제15조(의결권 및 선거권) 계원은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제16조(탈퇴) ① 계원은 이 계에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계를 탈퇴할 수 있다.

② 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이 계의 구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으로부터 탈퇴(조합원 제명을 포함한다)되어 조합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

③ 이 계는 계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총회 의결로 결정한다.

- ④ 이 계는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계원에 대하여 당연탈퇴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7조(제명) ① 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이 계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경비의 납입과 그 밖의 계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정관 그 밖의 규약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계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4. 삭제
- ② 이 계는 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계원에 계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장 경비부담

- 제18조(경비의 부과) ① 이 계는 제5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의 사업과 그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계원(계원가입신청자를 포함한다)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총회에서 정한다.
 - ③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계원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 ④ 계원은 납입하여야 하는 경비를 계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 제19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이 계는 계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② 이 계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위임에 따라 운송·보관 그 밖의 행위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계는 그 대행에 필요한 부대비를 징수할 수 있다.
 - ③ 사용료나 수수료 납입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총회

제20조(총회) ① 총회는 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계장이 된다.

제21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계장이 소집한다.

제22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장이 소집한다.

1. 계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계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으로 하는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계장에게 제출하고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계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있어서 이를 신속히 총회에 보고할 목적으로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일 이내에, 제3호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총회 소집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감사의 총회소집)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총회를 소집할 사람이 없을 때
 2.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계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2조제2항의 기간 이내에 총회 소집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
- ② 제1항의 경우에 감사는 총회소집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총회 소집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4조(계원 대표의 총회소집)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계원 대표가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1. 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의 기간 이내에 총회 소집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
 2. 임원 전원의 결원으로 총회를 소집할 사람이 없을 때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계원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5조(총회소집통지) 총회를 소집하려면 총회 개회 7일 전까지 회의목적 등을 적은 총회 소집통지서를 계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할 때에는 개회 전날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계원의 제명
3. 계의 해산
4. 간사를 제외한 임원의 선출과 해임
5. 자금의 차입
6. 사업계획 수립 및 수지예산의 편성과 그 변경
7. 결산의 승인
8. 경비의 부과·수수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결정
9. 어업권 또는 부동산과 이에 준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다만, 다음 각 목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으로 정한 행위
 - 나. 담보물권의 행사와 관련된 행위
10. 계원 및 준계원의 가입
11. 삭제
12.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으로 정한 것 이외에 새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상실하는 행위
13. 그 밖에 계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정관(예)(제1조 명칭 및 제3조 구역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관의 변경
2. 계의 해산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어업권 또는 부동산과 이에 준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2.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으로 정한 것 이외에 새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상실하는 행위
-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계의 해산
3. 임원(계장·감사·간사) 선출
4. 사업계획 수립 및 수지예산의 편성과 그 변경
5. 결산의 승인

제27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총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의결권의 제한 등) ① 총회에서는 제25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제외한 긴급한 사항으로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이 계와 총회 구성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구성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구성원은 제27조에 따른 총회의 구성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9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會期)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속행된 총회의 경우에는 제2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의결권의 대리 등) ① 계원은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② 대리인은 다른 계원,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 또는 본인의 사용인(使用人)이어야 하며, 대리인은 계원 1명만을 대리할 수 있다.

- 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이 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삭제

제32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사항 및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명 이상의 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③ 계장은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갖춰 두어야 한다.

제33조(총회의결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1. 계의 해산

2. 대의원회에서 총회로의 기관운영방식 변경에 관한 정관의 변경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계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계원 3분의 2 이상이 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회의의 목적으로 하는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계장에게 제출한 경우 계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주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계원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비고) 이 계의 계원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되,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34조(대의원회) ① 이 계는 제33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회는 계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계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대의원회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이 경우 "총회"는 "대의원회"로, "계원"은 "대의원"으로 본다)하되, 대의원의 의결권은 대리인이 행사할 수 없다.

제35조(대의원의 자격 및 선거 등) ① 대의원은 계원 중에서 선출하며, 대의원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② 이 계의 대의원의 수는 ○○명으로 하며, 대의원 선출구역은 동·리를 선출구역으로 한다. 다만, 선출구역별 대의원수는 계원 수에 비례하여 총회에서 정한다.

(비고) 제2항의 "○○"에는 계에서 두고자 하는 대의원의 정수를 10명 이상 15명 이내에서 명확하게 규정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 최종의 결산기의 최종월 이후 그 결산

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 정기총회가 종료될 때까지 그 임기는 연장된다.

- ④ 대의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보궐선거를 하며,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대의원의 결원 수가 대의원 정수의 5분의 1 이하인 때에는 보궐선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임기만료로 인한 대의원의 선거는 대의원의 임기만료 전 40일부터 15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야 한다.
- ⑥ 대의원은 이 계의 임원 또는 직원과 소속 조합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 ⑦ 제42조제1항제1호부터4호까지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대의원의 경우에 준용한다.
- ⑧ 제2항의 계원 수는 대의원 선거일 전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36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49조제4항을 준용한다.

1. 대의원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회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계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5장 임원과 직원

제37조(임원의 정수) 이 계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계장 1 명
2. 간사 1 명
3. 감사 1 명

(제1례) 계장을 총회 외에서 계원이 직접 선출하고자 하는 계의 경우에는 제38조제1

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야 한다.

제38조(임원의 선임) ① 계장은 계원 중에서 계원이 총회 외에서 직접 선출한다.

(제2례) 계장을 총회에서 계원이 직접 선출하고자 하는 계의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야 한다.

제38조(임원의 선임) ① 계장은 계원 중에서 계원이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제3례) 계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자 하는 계의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야 한다.

제38조(임원의 선임) ① 계장은 계원 중에서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4례) 계장을 임명제로 선출하고자 하는 계의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야 한다.

제38조(임원의 선임) ① 계장은 계원 중에서 계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② 감사는 계원 중에서 총회(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간사는 계원 중에서 계장이 임명한다.

④ 임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임원의 직무) ① 계장은 이 계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집행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간사는 계장을 보좌하고 계장이 궐위·구급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총회(대의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매 회계연도 1회 이상 계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이 계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을 발견하면 이를 총회와 조합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감사의 대표권) ① 이 계가 계장 또는 간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이 계를 대표한다.

② 이 계와 계장 또는 간사간의 소송에 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1레) 계장의 연임을 제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계의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야 한다.

제41조(임원의 임기) ① 계장과 간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레) 계장의 연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계의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야 한다.

제41조(임원의 임기) ① 계장과 간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
되, 계장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당선일이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이후일 때에는 당선공고일로부터 기산한다.

③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따라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당선공고일로부터 새로 기산한다.

④ 제35조제3항 단서 및 제5항은 이 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계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선거일공고일 현재 이 계의 계원 신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12. 계장 및 감사의 경우에는 선거일공고일 현재, 감사의 경우에는 임명일 현재 이 계 또는 소속 조합에 대하여 500만원 이상의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의 상환을 6개월을 초과하여 연체하고 있는 사람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②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이 될 수 없으며, 당선인이 선거일 후 임기 개시 전에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선인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 임기 중에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임원은 당연 퇴직된다. 이 경우 제11호 및 제12호의 "선거일공고일 현재" 또는 "임명일 현재"는 "현재"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⑤ 이 계의 임원은 재임 중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이 계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이 계의 임원은 법령, 법령에 따른 명령·처분·정관 및 총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계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임원이 결산보고서에 거짓의 사실을 기재하여 이 계 또는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는 계장과 간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임원 전원에 대하여는 계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계원대표가 행한다.

제44조(운영의 공개) ① 계장은 정관을 각 사무소에 갖춰 두어야 하고, 총회의사록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춰 두어야 한다.

1. 성명, 직업, 전화번호, 주소 또는 거소

2. 가입, 탈퇴의 사유와 그 연월일

3. 어업의 종류

4. 경비의 납입과 배당금 기록

② 계원과 이 계의 채권자는 제1항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계가 정한 수수료를 내고 서류의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발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 삭제

제46조(임직원의 겸직금지 등) ① 계장, 간사 및 감사는 상호 겸직할 수 없으며, 이 계의 임원은 대의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 계의 임원과 직원은 다른 계, 소속조합 또는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의한 협동조합을 포함한다)과 중앙회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 및 직원은 총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이 계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이 경우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47조(임원의 보수 등) 이 계의 임원에 대한 보수와 여비 그 밖의 실비 등은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48조(임시계장 임명) ① 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계원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계원 중에서 임시계장을 임명할 수 있다.

1. 계장 및 간사가 모두 궐위된 경우
 2. 계장이 궐위된 경우로서 간사가 계장의 직무를 대행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경우
- ② 임시계장은 취임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궐위된 계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③ 임시계장은 제2항에 따른 계장이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49조(임원의 해임) ① 계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 총회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 :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및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대의원회에서 해임결정
2. 총회 외에서 직접 선출한 계장 :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원 투표로 해임결정. 이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에 있어서는 제1호에 따른 정족수를 준용하며, 계원 투표에 의한 해임결정은 계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③ 계장은 간사가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거나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 ④ 해임 의결을 하는 때에는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임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50조(직원) 이 계는 필요한 수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장 사업의 집행

제51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계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그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2조(비계원의 사업이용) ① 이 계는 계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계원에게 제5조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1회계연도에 있어 비계원의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그 회계연도 사업량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 제6호, 제9호 및 제11호의 사업은 그 이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계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계원이 그 사업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1. 계원과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
2. 준계원
3. 다른 계 및 다른 계의 계원

제53조(공동판매)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동판매사업은 조합의 위탁판매사업에 지장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할 수 있다.

제54조(어업권의 행사) ① 이 계의 계원은 계가 취득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어업권의 행사에 관하여 이 계는 「수산업법」제38조에 따라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제7장 회 계

제55조(회계연도) 이 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6조(회계장부 등의 비치) 이 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춰 두어야 한다.

1. 계의 자산·부채에 관한 사항
2. 계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증빙서 및 거래통장을 포함한다)
3. 결산에 관한 사항
4. 보상금 수령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계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7조(장부의 공개) 제56조에 따른 장부는 주된 사무소에 비치 두어야 하며, 계원에게
공개한다.

제58조 삭제

제59조(적립금) 이 계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
립금으로 적립한다. <삭제 2010.10.13>

제60조 삭제

제61조(손실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이 계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손실금(당기순손
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한 때에는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하며, 보전한 후에도 부족
할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 ② 이 계는 결손을 보전하고 적립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을 배당하지 못한다.
- ③ 잉여금의 배당은 해당 회계연도에 있어 물자의 수량·가격 기타 사업의 분량을 참작
하여 계원 및 준계원의 사업이용 분량에 따라 행한다.

제62조 삭제

제63조(결산 등) ① 계장은 정기총회 1주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
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 두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열람 및 서류의 사본 발급 청구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을 준
용한다.

③ 계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4조(여유금의 운용) 이 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만 업무상의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와 공채의 매입
2. 중앙회 또는 소속 조합에의 예치

제8장 해산 및 청산

제65조(해산) ① 이 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1. 삭제
 2. 총회의 해산의결
 3. 계원의 수가 10명 미만인 때, 다만「도서개발 촉진법」제2조에 따른 도서의 경우에는 계원의 수가 5명 미만이 되는 경우로 한다.
 4. 시장·군수의 설립인가의 취소
 5. 파산 또는 지급불능
-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계가 해산한 때에는 그 해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소속 조합의 조합장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해산의 공고 및 통지) 이 계가 해산한 경우에는 2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2회 이상 개별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7조(청산인) 이 계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장이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청산인의 직무)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계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고 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9조(잔여재산의 처분) 청산을 완료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제70조(재산처분의 금지) 청산인은 이 계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공

탁한 후가 아니면 그 재산을 분배할 수 없다.
제71조(결산보고) 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2008-55호, 2008.7.3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예)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 이 정관(예)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의결한 날을 시행일로 하며, 시장·군수의 정관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인가일을 시행일로 한다.

부 칙 〈제2010-104호, 2010.10.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비고)어촌계에서는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대의원회) 의결일(○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비고)총회(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비고)계장의 연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계의 경우에는 다음의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
제2조(어촌계장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의 연임제한은 이 정관 시행일 이후 새로 선출되는 계장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2-80호, 2012.7.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3-158호, 2013.5.7〉

이 고시는 고시한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00호, 2016.1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일반인 어촌계 가입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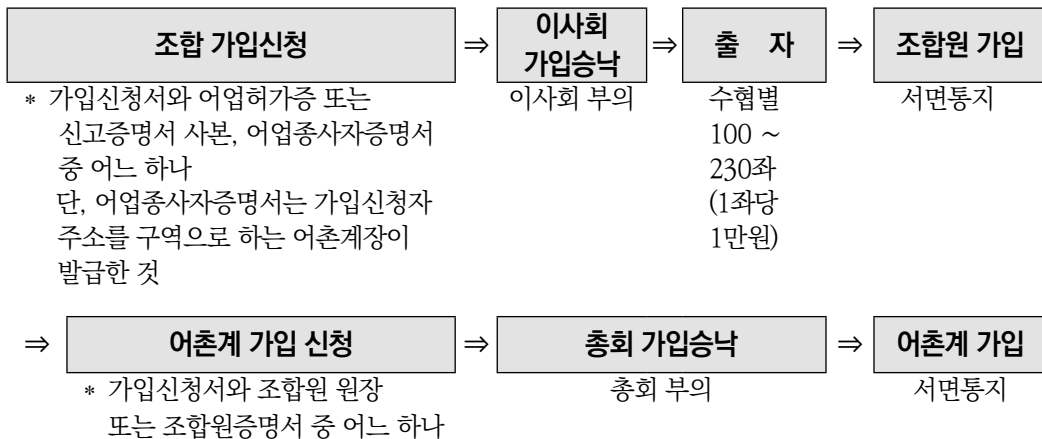
□ 관련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해양수산부고시 제2013-155호)
- 어촌계정관(예)(해양수산부고시 제2013-158호)

□ 가입개요

- 계원의 자격(어촌계정관(예) 제9조)
 -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계의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계에 가입할 수 있다.
 - ⇒ 조합원의 가입자격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에 의거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으로 1년 중 60일 이상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

○ 가입절차



해녀양성교재

제주해녀 이해

Understanding
of Jeju Haenyeo

발행일 2018년 12월

연구책임 좌혜경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51, 3층

전화 (064) 747-6138 팩스 (064) 747-6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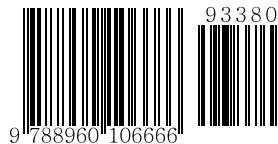
홈페이지: www.jst.re.kr

인쇄처 하나CNC

ISBN 978-89-6010-666-6 93380

사전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비매품/ 무료



9 788960 106666

ISBN 978-89-6010-666-6

